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금옹감독원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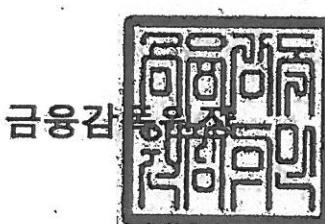
사본수신

## 제목 2019년 제10차 감사인 지정 본 투지(회사)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 귀 사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감사인을 지정(본통지)합니다. 참고로 「2019년 제10차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적인 감사계약 체결은 불필요합니다.

2. 회사는 외감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된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 일 이내에 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통지에 대하여는 동 통지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한편, 감사인 지정에 따른 감사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외감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회사는 별도의 감사인 선임보고가 필요치 않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 지정 내용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외감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제관리학 국제관리총괄팀

14/132

천일조사역

## 한마주 팀장(J)

1140

기초국어 국장

전체 41/42

1112

한의자

위상감사

시행 회계관리총괄팀-1949

( 2019.11.12. ) 접수

( )

우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http://www.fss.or.kr

전화번호 02-3145-7761 팩스번호 02-3145-7769

/mihnn@fca.or.kr

180

[불입]

감사인지정 명세

지정대상회사	회시군 지정군	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지정사유	지정사업연도	지정 감사인	감사인 지정군	지정기간	해당 차수
케이프	라	00152437	1801110051770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03	0559701234	주기적지정	2020.1.1.~2020.12.31.	대주	나	3년	1년